

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재단법인 환경재단 간

기관업무협약서

한국환경재단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재단법인 환경재단 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

1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 한다.
2.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사항 및 시행세칙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 홍보
2. 환경·보건 문제의 중요성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캠페인
3. 시민밀착형 시책연구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협력
4. 기술세미나,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비밀유지)

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본 협약서의 사업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후에도 동일하다.

제5조(사전고지)

양 기관은 협약서상 협력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쌍방 간 고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며, 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 조정 및 협약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협약내용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5월 13일

I • 보건환경연구원 • U
SEOUL

원장 신용승

신용승

KOREA GREEN FOUNDATION
환경재단

이사장 최열

최열

* 양 기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